

2022. 9. 20.(화)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

# 검 토 보 고 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세입·세출결산

## I. 일반회계 세입결산

### 1.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 ㉒	예산현액 (㉑+㉒)	징수 결정액 ㉓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 수납액 (③=①-②)		
계	16,000,000	0	16,000,000	16,006,671	16,006,671	0	16,006,671	0	0
세외수입	8,000,000		8,000,000	8,006,671	8,006,671	0	8,006,671	0	0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8,000,000		8,000,000	8,000,000	8,000,000	0	8,000,000	0	0

-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60억 보다 667만원 많은 160억 66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동일하게 하여 미수납액은 없음

## II. 일반회계 세출결산

### 1.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①	예산 성립 후 증감액②				예산현액 ③ (①+②)	지출액 ④	이월액 ⑤	보조금 반납금 ⑥	집행 잔액 (③-④-⑤-⑥)
		전년도 이월	예비비 사용	전용	변경					
방사광 가속기 추진 지원단	16,907,186	0	0	0	0	16,907,186	884,508	16,000,000	0	22,678

## 2.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①	예산 성립 후 증감액②				예산현액 ③ (①+②)	지출액 ④	이월액 ⑤	보조금 반납금 ⑥	집행 잔액 (③-④-⑤-⑥)
		전년도 이월	예비비 용	전용	변경					
계	16,907,186	0	0	0	0	16,907,186	884,508	16,000,000	0	22,678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 미래 혁신성장 견인	16,847,000	0	0	0	0	16,847,000	843,807	16,000,000	0	3,193
행정운영 경비	60,186	0	0	0	0	60,186	40,701	0	0	19,485

-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169억 719만원으로, 예산현액 중 8억 8,451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60억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268만원임

### 3. 예산전용 (해당없음)

### 4. 예산이체 (해당없음)

### 5. 예비비 지출 (해당없음)

### 6. 이월사업

#### 가. 명시이월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㉑	지출 원인액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집행잔액 ㉔=㉑-㉒-㉓	이월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6,000,000	0	0	16,000,000	0	
방사광 가속기 추진 지원단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매입	시설비	16,000,000	0	0	16,000,000	0	오창 TP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행정절차 완료 후 부지 선계약 가능

- 명시이월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매입 1건에 160억원이 있으며 부지매입 계약 전에 실시 되어야할 행정절차 지연으로 발생하였음

나. 사고이월 (해당없음)

다. 계속비 이월 (해당없음)

### Ⅲ. 검토의견

- 2021회계연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실제수납액은 160억 66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0%의 징수율을 보이는 등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됨
- 2021회계연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음
-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9억 719만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6조 3,189억 5,125만원의 0.3%에 해당되며 예산현액 전액을 지출하는 등 대체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됨
- 명시이월의 경우, 명시이월 사업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부지매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가 선행되어야 부지매매 계약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의 토지 보상 및 분양계획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발생한 상황임
- 다만, 명시이월이 비록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산의 이월은 당해 연도에 활용할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므로 주의가 필요한 바, 향후에는 예산을 전액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와의 긴밀한 협의와 정확한 사업 예측으로 가급적 이월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